

학생상벌 내규

- 제정 : 1982. 04. 04
- 개정 : 1988. 09. 19
- 개정 : 1997. 03. 01
- 개정 : 2005. 05. 13
- 개정 : 2006. 08. 22
- 개정 : 2017. 05. 0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학칙 제55조, 56조에 규정에 따라 학생상벌 및 포상에 관한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학생포상

제2조(포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1. 대학과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
2. 교내·외에서 봉사활동(선행)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
3. 지도력이 탁월하여 학생활동에 공로가 크거나 대외적으로 학교 명예를 크게 선양한 자

제3조(발의)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학생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상정·발의할 수 있다.

1. 공적조서
2. 상장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
3. 학과교수 추천서

제3장 학생징계

제4조(징계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1.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
2. 교직원의 학생지도에 불순한 태도나 반항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
3. 수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지장을 초래케 한 자
4. 학교의 비품 절취 또는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시킨 자
5.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자

6. 각종 온·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, 학생 선동 행위,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자
7.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

제5조(발의) 제4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상정·발의할 수 있다.

1. 본인 진술서(본인의 거부 시 생략할 수 있음)
2. 사건 경위서
3.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

제6조(구분) 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퇴학으로 구분하며 징계기간은 근신 1개월, 유기정학 6개월,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근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할 수 있다.

1. 교직원에 대하여 언행이 불순한 자
2. 학습태도가 불량한 자
3. 윤리규범에 어긋나고 언행이 불량한 자
4. 각종 온·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, 학생 선동 행위,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
5. 기타 앞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

제8조(유기정학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.

1.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
2.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
3. 허가 없이 공고물이나 유인물을 배부 및 부착한 자
4. 폭행을 가한 자
5.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
6. 당해 학년에서 2회 이상 근신처벌을 받은 자
7. 각종 온·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, 학생 선동 행위,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
8. 기타 앞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

제9조(무기정학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.

1. 교직원에 대한 언행이 심히 불순한 자
2. 고의적으로 학교시설물을 파손한 자
3. 집단 폭행한 자
4. 학원 내에서 집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
5. 금품 및 물품을 갈취한 자
6. 학생 신분을 망각하고 극히 불미한 행동을 한 자
7. 당해 학년에서 2회 이상 유기정학을 받은 자

8. 각종 온·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, 학생 선동 행위,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
9.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

제10조(퇴학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에 처할 수 있다.

1.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2. 학교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
3. 행정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류를 탈취한 자
4. 실형선고를 받은 자
5. 타대학에 입학한 자
6.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
7. 재학 중 2회 이상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자
8.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, 학생 선동 행위,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
9. 기타 앞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

제11조(징계의 효과) ① 퇴학 이외의 징계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으면서 15일마다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.

- ②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.
- ③ 근신외의 징계처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.
- ④ 퇴학 이외의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한다.

제12조(징계의 해제) ① 학생지원처장이 징계해제를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결과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(학과장 경유)를 접수한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케 한다.

- ② 학생지원처장은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.

제13조(징계사실의 통보) ① 학생지원처장은 징계의 사실을 지도교수, 학과장, 학부형과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교무처(학적과)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기타)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내규는 198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내규는 198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내규는 198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내규는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06년 8년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본 내규 시행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학생상벌 관련 제반 업무는 이 내규에 의거 시행 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